

1. 선거운동 개요

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

- 문자메시지 ·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
-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

정당 ·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

-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· 방송연설
※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만 가능
-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

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

한국국제협력단 · 한국국제교류재단 · 재외동포재단의
상근임 · 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

2. 단체의 선거활동 참여



단체의 선거운동 금지

단체(그 대표자와 임 · 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
명의로 선거운동 불가



공명선거 추진활동

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캠페인 가능

- ※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 견지
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

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단체(예시)

-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 · 운영하는 단체
-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
-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

3. 위반사례 예시

»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모금 행위

할 수 있는 사례	할 수 없는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등을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·게시하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당직자등이 재외동포간담회에서 특정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호소하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자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시민권자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행위

» 금품·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

할 수 있는 사례	할 수 없는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 정관·규약, 운영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 정당·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를 부탁받고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인회 대표자등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등에게 고국 방문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

» 언론·인쇄물·시설물 및 지위 이용 선거운동

할 수 있는 사례	할 수 없는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후보자(입후보예정자포함)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, e-mail,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행사주최자가 정책간담회 개최장소등을 고려 제한된 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·교회·학교등에 게시하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·반대를 유도하는 행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인방송·한인신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

»모임·행사 및 팬클럽 활동 등

할 수 있는 사례	할 수 없는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 상황·동정 등(지지·선전내용은 불가)을 게시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·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▪ 각종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▪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거나,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▪ 팬클럽이 해당 정치인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회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

4.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

[여권 발급·재발급 제한]

- 대상
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,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 중지된 사람
- 방법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·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함.

[외국인의 입국금지]

- 대상
선거범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
- 방법
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함.